

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|
| 접수번호 | | 접수일 | | 처리기간 | 7일 |
| 신청인 |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| |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 |
| | 주소 | | | 전화번호 | |
| 운영형태 및 변경 사유 | 운영형태(광역형 또는 도시형) | | | | |
| | 변경사항 | 변경 전 | | 변경 후 | |
| | | 변경 사유 | | | |

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

귀하

| | | |
|------|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신규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.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. 차고 나. 정류소 다. 영업소 라. 휴게실 및 대기실 마. 교육훈련시설 바.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-|-----------|

처리절차

